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9,437,421,645	283,122,650
일	반 회 계	8,431,267,988	252,938,040
특	별 회 계	1,006,153,657	30,184,610
	기 타 특 별 회 계	1,006,153,657	30,184,610
	농 어 촌 주 택 사 업	8,039,153	241,175
	의 료 급 여 기 금	581,602,882	17,448,086
	동 부 권	36,683,368	1,100,501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27,458,913	823,767
	소 방	351,643,342	10,549,300
	특정자원분 지역 자원 시설 세	725,999	21,78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9,423,44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193,4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